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양돈농장에서 총 21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년 10월 첫 발생 이후 발생지역이 지속 확산되면서, 접경지역 및 인근 21개 시군에서 총 1,748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에서도 검출되어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단서 중 “내부 울타리”를 “외벽을 내부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하여 해당 구간에는 내부울타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내부 울타리는”을 “내부울타리는 지면에서 쉽게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로 한다.

다.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 ·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 평상 형태의 고정된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 (다) 본문 중 “울타리 시설”을 “외부울타리”로 하고, 같은 (다)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에 1)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에 (아)부터 (카)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에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 1)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 2)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평상 형태의 고정된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 5)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아)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에 방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포충등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 방충장비를 구비

할 것

(자)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차)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카)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를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 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 2)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 3)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4)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바)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마호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1)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
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출입자”
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 1)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
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 2)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
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 3)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
치하거나 부착할 것
- 2)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
록 설치할 것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
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내부울타리는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
에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
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
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
는 외벽을 내부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하여 해당 구간에
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